##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991

발의연월일: 2020. 12.29.

발 의 자:김영주·안민석·김영호

백혜련 · 송영길 · 이상민

김성환・김교흥・박 정

홍익표·설 훈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단기적지원 뿐 아니라 기업의 자발적 신규 고용을 유발하는 매출 확대, 생산성 향상 및 기업 브랜드 가치 제고 등을 위한 지원방식이 요구되고있음.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생산품의 우선 구매제도 도입을 위해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에는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해 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를 통해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고 북한이탈 주민 고용기업으로서의 사회적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신규 일자 리 창출과 기존 일자리의 지속적 유지를 기대할 수 있음. 그러나 동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통일부장관이 모범 사업주에 대한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를 법률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모범 사업주'로 인정하고 통일부장관이 '모범 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그 밖의 공공단체로부터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자 함(안 제17조의5).

법률 제 호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5(우선 구매 등)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할 것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한이탈주민 으로 고용할 것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이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로부터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5(우선 구매 등) 통일부	제17조의5(우선 구매 등) ①통일
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고용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	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모
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	두 충족하는 모범이 되는 사업
하는 바에 따라 생산품 우선	주에 대해서는 생산품 우선 구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
	이탈주민을 고용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한
	이탈주민으로 고용할 것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이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로부터 우선적으로 구
	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
	<u>다.</u>